

동두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-10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8 . .
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환경 분쟁 등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함

2. 주요내용

가. “악취 등” 을 “악취, 일조 등”으로 한다.(안 제4조제3항)

나. “악취 등” 을 “악취, 일조 방해 등”으로 한다 (안 제4조제4항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동두천시환경기본조례”를 “동두천시 환경기본 조례”로 한다

제4조제3호 중 “악취 등” 을 “악취, 일조 등”으로 한다.

제4조제4호 중 “악취 등” 을 “악취, 일조 방해 등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환경보호과
입 안 자	실 · 과장 직위 · 성명	환경보호과장 조이현
	담당 · 팀장 직위 · 성명	환경기획팀장 고경희
	담당자 성명 · 전화	주무관 이옥란 860-2243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정의) (생 략) 1~2 (생 략) 3. "생활환경"이라 함은 대기, 물, 폐기물, 소음·진동, <u>악취등</u>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. 4. "환경오염"이라 함은 사업 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, 수질오염, 토양오염, 해양오염, 방사능오염, 소음·진동, <u>악취등</u> 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. (생 략)	제4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~2 (현행과 같음) 3. _____ _____ <u>악취,</u> _____ <u>일조</u> _____ <u>등</u> _____ 4.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<u>악취, 일조 방해 등</u> _____ 5. (현행과 같음)